

#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# 1. 제안이유

- 조례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4조제4항 삭제
  -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되므로 삭제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 조례 제 호

##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4조(추진계획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제3항에 따른 협조·요청을 받은 법인·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4조(추진계획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## 4. 작성자

작 성 자	주민생활지원과장 남 동 선
연 락 처	(033)330-2150